

국가보훈처 행정7급(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25일

국가보훈처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임기	근무예정 부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및 후손찾기	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 `24.6.30.까지	공훈관리과 (세종시)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주요 업무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추진사항 및 결과 등 관리 지원 ○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및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 업무 등 지원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행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최종시험예정일 기준('22.6.2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2.6.21.)]

채용 자격 요건	
학위요건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요건	1.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3.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요건의 경력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1) 관련분야 학위 : 역사학, 기록학
2) 관련분야 경력 : 역사 관련 자료 수집·조사·번역·관리 분야 경력자

【응시자격요건】

○ 기본사항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 해당되는 경력요건, 학위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응시자격요건의 중복선택 또는 미선택 시 부적격 처리(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선택한 응시요건이 다를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응시요건을 적용)**
- '학위1·학위2·경력1·경력2·경력3' 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 요건만 선택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최종경력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의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과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예) 2년간 주당 2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1년임)
-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경력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하지 않음

○ 학위의 범위

- '학위'요건의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증명서 상의 전공분야 및 논문내용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2.6.7.)]

우대요건
○ 응시자격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1년 이상)
○ 응시자격으로 활용하지 않은 학위(학위에 따라 차등 배점)
○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점수에 따라 차등 배점) - 중국어 : 신HSK 5급 210점 이상 - 일본어 : JPT 740점 이상, JLPT N2 150점 이상 ※ 최종합격자 발표일('22.6.28.)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
○ 한자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2급 이상인 자(급수에 따라 차등 배점)

【우대요건】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별 인정범위 및 배점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과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예 2년간 주당 2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1년임)
-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 학위
 - 관련 학위 : 역사학, 기록학
-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 우수자
 - 각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 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 인정
 - 어학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22.6.28.)으로 2년 이내** 취득점수를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으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한자능력 검정시험 성적 우수자
 - 한국어문화·대한상공회의소 주관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인정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 29,762천원(하한) ~ 62,019천원(상한) ※ 기타 수당 별도
- 임기제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

6. 시험방법

-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의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함(5순위 동점자 발생으로 5순위까지 인원이 5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합격 가능)
 -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경력·연구실적·자격증)

○ 제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7. 직무기술서

□ 독립유공자 공적전수조사(일반임기제 7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주요업무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추진사항 및 결과 등 관리 지원 ○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및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 업무 등 지원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

필요지식	○ 국가보훈처 및 보훈업무에 대한 이해 ○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 활동 이후 행적에 대한 이해 ○ 중국·일본 등 해외사료 및 제적등본, 족보 등 고문서에 대한 이해
------	---

관련분야 : 독립유공자 공적전수조사

응시자격요건	학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관련 학위 및 관련 경력		[관련학위] 역사학·기록학 전공자 [관련경력] 역사학 관련 자료 수집·조사·번역·관리 분야 경력자
우대요건		○ 응시자격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응시자격으로 활용하지 않은 학위 ○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기준 이상인 자 ○ 한자능력검정시험 성적이 기준 이상인 자

8. 시험일정

- 채용공고 : '22. 5. 25.(수) ~ '22. 6. 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6. 14.(화) 예정
 -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22. 6. 21.(화) 예정
 - ※ 면접시험 일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2. 6. 28.(화) 예정
 -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변경·연기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제출한 응시원서 상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예정)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2. 5. 25.(목) ~ '22. 6. 7.(화)
 - ※ 응시원서는 국가보훈처(www.mpva.go.kr)·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 응시수수료 : 7,000원(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접수처 : 국가보훈처 5층 운영지원과(☎ 044-202-5313)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우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 ※ 겹봉투 표지에 '행정7급(일반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증' 기재
 - ※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2.6.7.) 18:00 이전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택배·전자우편·퀵서비스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 원서접수 마감일(22.6.7.)의 '등기우편 접수 마감시간~18:00'에 등기우편을 접수하여 발송할 경우 우체국 영업일 기준으로 접수일 3일 후에 도착(22.6.9. 도착 예상)할 수 있으므로 등기우편 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요망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10.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를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바로 뒤에 첨부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경력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표지는 작성하지 말 것)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용지 4매 이내(표지는 작성하지 말 것 요약본 1매 포함) -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서 담당 업무가 불명확하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 ※ 별지서식 제5호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 확인담당자 서명과 관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 ○ 발급 확인자 연락처·이메일 주소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공증이 없을 경우 불인정)	해당자만
6. 대학교 이상 학위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수료·재학 시에도 제출) ※ 학위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을 제공하지 않음 예 최종학력이 박사일 경우 박사석사학사 모두 제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해당자만
7. 학위논문 요약서 (별지서식 제6호)	○ 논문 표지·논문요약 표시 페이지 사본 각 1부(학위논문 요약서 바로 뒤에 첨부)	해당자만
8. 어학성적 증명서 1부	○ 어학성적 증빙서류 1부	해당자만
9. 한자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1부	○ 한자능력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해당자만
10.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1.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12.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종	○ 4대 보험 중 1종에 대한 확인서 제출(예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발급 가능	경력 해당자만
13.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부	○ 근무경력(상근·비상근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발급 가능	경력 해당자만

- ✓ 제출서류는 위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클립 또는 집게 사용하여 전체를 하나로 묶음,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양면인쇄 금지**)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위논문요약서, 연구논문요약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연구실적·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 확인 예정
- ✓ 위 서류(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증빙서류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출을 삼가주시기 바람(제출하는 경우에도 서류전형·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 채용담당자 이메일 : henrygo@korea.kr (보완서류 제출 시 참고)

11. 기타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채용시험 합격자에게 준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공고문의 별지서식 제8호를 작성·서명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이메일(henrygo@korea.kr)로 제출]
- ※ 반환청구 신청기간 : '22. 6. 29. ~ '22. 7. 28.(채용서류 반환청구서에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주소지로 작성 요망)

○ 응시자 준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 ~ 제7호 위반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공지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 044-202-5313, henrygo@korea.kr)